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진흥기획과)
연 월 일	20 . . .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910호, 2020.8.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근거 조항 반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910호, 2020.8.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항 반영 (안 제1조)

나. 부처 명칭 반영 및 관련 법령 구체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고, 취직인허증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4조제1항제7호)

다. 용어 정비 등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출연자"를 "외국인 출연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훈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및 7호 등)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소관부서에서"를 "소관부서의 장이"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를 "「방송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출연자"를 각각 "외국인 출연자"로 하고, 같은 호 중 "노동부장관"을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부터"를 "제1호 내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	-----	-----	-----
제2조(업무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출연 등 취업목적에 위한 외국인 고용추천 관련 업무는 각 매체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조(업무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소관부서의 장이 ---.
제3조(추천신청 자격)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추천신청 자격)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	-----	-----
2.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이하 “방송사업자”라	2. 「방송법」 제2조제3호----	-----	-----	-----

한다)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 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자(종합편성 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콘텐츠사업자 제외, 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자”라 한다)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법」 제2조제5호----- ----- ----- -----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4조(고용추천) ① 고용추천 신 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 식 고용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4조(고용추천) ①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6. 외국인 출연자----- -----
7.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노 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 허증	7. 외국인 출연자----- -----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 --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 자과전사업 허가증 사본 1부	8. ----- -----

(다만, 제3조 <u>제1호부터</u> 제3호 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 외한다.) 9. (생 략) ② ~ ④ (생 략)	----- <u>제1호 내지</u> ----- -----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